



시 보



제1736호 2026. 3. 30. (월)

조례 · 규칙

○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12
○ 목포시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 목포시 위기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 목포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7
○ 목포청년센터 누리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31
○ 목포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48
○ 목포시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50
○ 목포시 갈등유발 예방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53
○ 목포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55
○ 목포 종합경기장 관리·운영 조례	59
○ 목포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83
○ 목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95
○ 목포시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00

고 시

○ 2026년 목포시 지적재조사사업 위수탁 고시	106
----------------------------	-----

회람							
----	--	--	--	--	--	--	--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3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4012 호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시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실이”를 “사실”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18조”를 각각 “제17조”로 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중 “제외한다)그”를 “제외한다) 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없어 지거”를 “없어지거”로, “제외한다)그”를 “제외한다) 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를 “일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참·조퇴”를 “지각·조퇴”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없을때,”를 “없을 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있을 때,”를 “있을 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한다.

제23조제8호 중 “국가단위”를 “국가 단위”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 번에”를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제2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학년”을 “2학년 이하의”로, “24개월”을 “36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18조”를 “제17조”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본문 중 “제14항제1호”를 “제11항제1호”로, “말한다.)수”를 “말한다.) 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 단서의 후단 중 “사용 시”를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0항 중 “부여 할”을 “부여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1항 및 제2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㉑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㉒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소급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의2조 제6항 단서에서 “시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26조 중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생략)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현행과 같음)
② <u>시장</u> 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② <u>의장</u>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연가일수) ①·② (생략)	제17조(연가일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당 연도에 결근·정직·강등·직위해제 <u>사실</u> 이 및 제2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③ ----- ----- <u>사실</u>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략)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8조</u> 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	② <u>제17조</u> ----- ----- -----. -----

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④ (생략)

⑤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
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
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저
축한다.

⑥ (생략)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② (생략)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
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휴
직 중 공무상 부상 등으로 인하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제17조-----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그
휴직기간

2. ~ 4. (생 략)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편 ·
폐지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직위가 없어 지거나 정원이 초
과되는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
지 못한 경우(의장으로부터 특
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그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6. (생 략)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
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
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
수는 결근으로 본다.

⑤ (생 략)

⑥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
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
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⑦ (생 략)

제22조(병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 제외한다) 그 -----

2. ~ 4. (현행과 같음)

5. -----

없어지거-----

----- 제외한다) 그 -----

6. (현행과 같음)

④ -----

----- 일수-----
-----.

⑤ (현행과 같음)

⑥ -----
지각·조퇴 -----
-----.

⑦ (현행과 같음)

제22조(병가) ① -----

-----.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
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
조제7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
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
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
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
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
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
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3조(공가)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적으로 필
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
가해야 한다.

1. ~ 7. (생략)

8. 올림픽 · 전국체전 등 지방 또
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 ~ 12. (생략)

---.

1. -----
----- 없을 때

2. -----
----- 있을 때

② -----

- 범위 안-----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공가) -----

-----.

1. ~ 7. (현행과 같음)

8. ----- 국
가 단위 -----

9. ~ 12. (현행과 같음)

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⑬ · ⑭ (생략)

⑮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⑯ ~ ⑲ (생략)

⑳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생일이 속하는 해당 월에 1일의 기념일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신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⑬ · ⑭ (현행과 같음)

⑮ -----

-----.

-----.

----,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

⑯ ~ ⑲ (현행과 같음)

⑳ ----- 부
여할 -----.

㉑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㉒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

제24조의2(특별휴가) ⑥_____ _____ _____ _____. 이 경우 시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u>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소급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u> 제24조의2(특별휴가) ⑥_____ _____ _____ _____. 이 경우 의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제26조(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u>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u>에 대한 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9를 따른다.	제26조(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 ----- ----- <u>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u>----- ----- -----.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3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4013 호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2.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이나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2.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학교 등에 재학 중인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3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4014 호

목포시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조례가”를 “조례로”로 한다.

제7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종결할 시 자동 해산한다.

제19조 중 “「목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갈등영향분석) ① ~ ③ (생략) ④ 시장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u>조례</u> 가 정한 갈등영향분석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갈등영향분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조례</u> <u>로</u> ----- -----.
제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③ (생략) ④ <u>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u> ⑤ ~ ⑨ (생략) <u><신설></u>	제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u><삭제></u> ⑤ ~ ⑨ (현행과 같음) <u>⑩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상정안전에 대한 심의·의결을 종결할 시 자동 해산한다.</u>
제19조(수당지급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또는	제19조(수당지급 등) ----- -----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나 제14조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목포시위원회실비변
 상조례」에 준하여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목포시 각
 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목포시 위기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3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4015 호

목포시 위기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위기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목포시 위기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목포시 위기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심리적”을 “사회심리적”으로, “등의”를 “등 중대한”으로,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을 “경험하였거나 목격함으로써 발생하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상처로 그 영향이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 공동체 전반에 걸쳐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상태를 포괄적으로”로 한다.

제3조 중 “심리적”을 “사회심리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심리적 외상을”을 “사회심리적 외상(이하 “심리적 외상”이라 한다)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목포시 위기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u>심리적 외상</u>”이란 재난,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자살 등 의 사건·사고를 직접 <u>경험하 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 는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u>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 하 “시장”이라 한다)는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 동·청소년의 <u>심리적 외상</u>을 예 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 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	<u>목포시 위기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u>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u>사회심리적</u> ----- ----- ----- 등 중대한 -- ----- <u>경험하거나 목격함 으로써 발생하는 극심한 정신 적 충격과 심리적 상처로 그 영향이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 공 동체 전반에 걸쳐 심리적 회 복이 필요한 상태를 포괄적으 로</u> ---. 제3조(시장의 책무) ----- ----- ----- <u>사 회심리적</u> ----- ----- -----.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하여 목포시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 사회
심리적 외상(이하 “심리적 외상”이라 한다)을 -----

-----.

② (현행과 같음)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3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4016 호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위기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 교육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피해자 권리 구제의 방해, 피해자의 대한 폭행·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 예방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② (생략) <u><신 설></u>	제3조(시장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 교육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u>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 (피해자 권리 구제의 방해, 피해자의 대한 폭행·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 예방에 관한 사항</u> <u>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u> <u>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u>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시 <u>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u> <u>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 (피해자 권리 구제의 방해, 피해자의 대한 폭행·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 예방에 관한 사항</u> <u>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u> <u>3.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u>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3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4017 호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8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
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호(종전의 제9호) 중 “제8호”를
“제10호”로 한다.

8. 스포츠와 4차 산업 기술을 융합한 스포츠 산업 육성

9.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수익 창출 관련 사업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설 이용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업) 법인은 제1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7. (생 략) <u><신 설></u> <u><신 설></u> 8. · 9. (생 략)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 된 부대사업 제15조(수익사업) (생 략) <u><신 설></u>	제8조(사업) ----- ----- -----. 1. ~ 7. (현행과 같음) 8. <u>스포츠와 4차 산업 기술을 융합한 스포츠 산업 육성</u> 9. <u>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수익 창출 관련 사업</u> 10. (현행 제8호와 같음) 11. (현행 제9호와 같음)----- <u>제10호</u> ----- 제15조(수익사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법인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 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설 이용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u>

목포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3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4018 호

목포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프랜차이즈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목포시 프랜차이즈산업”이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 중 목포시 관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한 가맹본부와 그 가맹점사업자들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 프랜차이즈산업(이하 “프랜차이즈산업”이라 한다)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공장시설, 사무소,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 ①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목포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프랜차이즈산업 현황 및 성장 전망 분석
3. 프랜차이즈산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방안
4. 그 밖에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는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9조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맹본부 성장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2.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3. 법률 상담 지원
4. 프랜차이즈 박람회 등의 개최 지원
5. 프랜차이즈산업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사업화 지원
6. 프랜차이즈산업 홍보 등 마케팅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

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 운영)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프랜차이즈산업발전협의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프랜차이즈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프랜차이즈산업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제6조 각 호에 관한 사항
3.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사업의 위탁 및 지원
4. 그 밖에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프랜차이즈 대표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3.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프랜차이즈산업발전협의회는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20조에 따른 목포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청년센터 누리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3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4019 호

목포청년센터 누리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설치한 목포청년센터 누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목포청년센터 누리(이하 “센터”라 한다)”란 청년과 시민들의 소통·교류, 협업 활동 등의 거점이 되고 청년의 취·창업지원, 일자리 창출, 문화생활 등에 필요한 지원을 수행하는 시설물이다.
3. “사용허가”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을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청년창업공간”이란 시장이 창업자의 정착과 성장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7. “입주자”란 청년창업공간에 입주한 청년창업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센터 지원기준 및 사용기준, 지원금 정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청년센터 누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및 사무원 등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채용, 보수, 복무 등 인력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센터 운영기준) 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②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등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의 시설이나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센터의 기능)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센터의 능력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시행 및 지원
3. 청년의 취업·진로·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청년의 자립 기반 확대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지원
6. 예비 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사업
7.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8.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9.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10. 그 밖에 청년 취·창업, 일자리 창출 정책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시설이용(본관)

제7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청년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청년창업공간의 사용 및 입주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1.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단체가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회의 등

3. 제1호, 제2호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경우

② 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온라인 예약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일시에 사용허가 신청이 둘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허가한다.

④ 사용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센터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상업성, 정치성, 종교성이 있는 활동인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안전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사용자가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6.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사용료 납부) ① 제7조에 따른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청년창업공간의 사용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면제

가.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단체가 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회의 등

2. 사용료 100분의 50 감경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 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를 제시한 경우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독립유공자증이나 독립유공자 유족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를 제시한 경우

마.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18세 이하에 해당하는 둘 이상(태아를 포함한다)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목포시민

바.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회의 등

제12조(사용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시설의 사용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과 같다.
-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의무 등) 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변상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 ③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의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3장 청년창업공간

제14조(청년창업공간 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
2. 창업 관련 교육, 컨설팅, 마케팅 등 창업역량 강화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입주자 선정) ① 입주자 선정 대상은 청년창업예정자를 포함한 청년창업가로서 목포시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입주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입주기간 중 사업실적 등 심사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청년창업공간 입주자 선정 및

연장 심사를 위해 목포청년센터 누리 청년창업공간 입주자 선정심사위원회 (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출석으로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심사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선정 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전문성이 있는 자로 구성하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참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전공을 한 자

3. 3년 이상 청년 창업의 육성 및 지원 관련 전문 기관·시설·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4. 목포시 소속이 아닌 관계공무원

5. 창업 관련 경험이 풍부한 청년 창업자

6.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⑤ 심사위원회는 창업공간 입주자 선정 및 연장 심사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⑥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심사기준 등에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7조(입주자 지원)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청년창업공간에 입주한 자의 안정적인 활동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추가로 할 수 있다.

1. 입주자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2. 센터 시설 및 공간에 대한 우선 이용 또는 대관

3. 취·창업, 경영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입주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입주자 선정의 취소)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거나 입주승인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입주공간에 장기간 상주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창업공간의 사업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청년창업공간 사용료 부과) ① 시장은 입주자에게 연 사용료, 입주보증금, 각종 공과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연납으로 한다.
- ③ 전기료, 상하수도료, 무인경비, 인터넷 등 각종 공과금은 개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 ④ 입주기간 만료 이전에 정당한 사유로 입주가 취소되거나 입주자가 퇴실하고자 할 경우 해당기일까지의 사용료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하고,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정산 후 반환한다.

제20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입주계약 및 운영규정 등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입주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유·무상 여부와 상관없이 시설물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대여할 수 없다.
 3. 다른 입주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4. 입주기간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통지받은 기간 내에 시설을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 및 입주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지하는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입주자의 주의의무 및 책임) 입주자는 시설물 사용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제22조(원상복구 및 변상조치) ① 시장은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화재, 고장, 분실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해당 비용을 충당할 수 있으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퇴실) ① 입주자는 입주기간 만료일 다음 날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사업환경 변화로 퇴실을 원하는 경우 퇴실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계약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입주 시 체결한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2. 계약연장 평가 결과 퇴실이 결정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출근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입주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시설을 양도 또는 임대하였을 경우
5. 제20조에 해당하는 입주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6. 재산의 압류, 행정처분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7. 시설의 손괴, 위험물 취급 등 운영기관이 정한 금지 행위를 하는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목포시 청년·일자리 통합센터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목포청년센터 누리」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또는 대표자(단체명)	(☐ 남, ☐ 여)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사용기간 (준비·정리시간 포함)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시간)	사용인원 명(남 /여)		
사용목적 (변경사유)	☐ 커뮤니티 ☐ 교육 ☐ 네트워킹 ☐ 동아리 ☐ 기타() ※ 승인 신청 이후 시간 중복이 될 경우 담당자가 조율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공간	☐ (3층)세미나실/상담실 ☐ (3층)회의실 ☐ (4층)공동작업공간			
	☐ 빔프로젝터 + 스크린 ☐ 음향시설(마이크)			
행 사 명				
사 용 료	일금 원(W)			
「목포청년센터 누리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단체명) : (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				
첨 부	감면증빙서류 등 1부.			

유의사항

1. 대관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고 기재사항이 누락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용목적과 행사명·행사소개는 반드시 작성바랍니다.
3. 사용할 공간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중복 사용 가능하나, 사용 신청이 기 완료 된 경우 중복 사용 불가능)
4. 사용시간은 사용료 산출근거가 되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사용 시간에는 준비 및 정리시간까지 포함됩니다.
5. 신청한 사용시간을 초과하면 30분 미만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되며, 1시간 이상 초과 시에는 다음 회 사용료의 전액이 가산됩니다.

「목포청년센터 누리」사용허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목포청년센터 누리」에 저장·처리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며, 1년 보관 후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의 보유목적) 목포청년센터 누리 사용허가 신청서, 서약서에 기록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대관업무 운영을 위해 필요합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대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관정보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전화(휴대폰)번호
------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포청년센터 누리 대관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지 않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파기) 목포청년센터 누리 대관업무에 제공된 개인정보는 1년 동안 보유하며, 보유기간 만료 후 즉시 파기 합니다.
5.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삭제) ②항의 개인정보가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본인의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 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사 및 조사가 진행 중인 업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거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관을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목포청년센터 누리 대관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목포시 청년센터 개인정보처리자가 수행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반 처리 절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시설물 이용조건 및 서약서

□ 이용조건 및 서약사항

1. 센터 시설은 **사용신청서에 명시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대관 신청은 **이용일 기준 한 달 전부터** 가능하며, **주 2회를 초과하여 대관할 수 없습니다.**
3. 대관 신청 시 승인된 **시작 및 종료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추가 이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향후 시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같은 요일·시간으로 5주 연속 대관할 수 없으며, 팀당 1일 최대 대관 시간은 4시간으로 제한**합니다.
5. 실제 이용 내용이 신청서와 상이하거나, 취소·변경 사항을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추후 시설 대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관 예약 수정 또는 취소는 **이용일 기준 최소 3일 전까지**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시설은 **이용 전 상태로 정리·정돈**하여야 하며, 행사 중 발생한 모든 쓰레기는 **이용자가 직접 회수·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책자, 유인물, 현수막 등 **행사 관련 홍보물은 사전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모두 수거하여 반출**하여야 합니다.
7. 센터의 **사전 승인 없이 음식물 반입, 다과회, 화환 및 기자재 반입은 제한**됩니다.
8. 시설 이용 중 시설물 또는 기자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센터 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시설물·기자재의 분실 또는 파손 시 이용자(단체 또는 개인)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9. 행사 진행을 위하여 설치한 장비 및 물품의 정리·원상회복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센터는 임의로 조치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10. 센터 내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으며**, 도난·분실·파손 등에 대하여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 시설 이용 시 **필요한 경우 안내 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참가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며, 대관 기간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정치적 또는 종교적 활동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경우
-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
-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시설 사용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 신청 내용과 다르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본인은 대관을 신청함에 있어 상기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준수할 것이며, 위 사항을 위반 시에는 대관 취소, 즉시 행사 중단 및 향후 일체 대관 중지 등의 조치에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목포청년센터 누리」 사용허가 대장

년도

연번	접수일	신 청 자		신 청 내 용						승인 (불승인) 통보일	사용료 (감면 사유)	결 재	
		성 명 (단체명)	연 락 처	사용기간	사용장소	사용목적	이용인원					담당자	관리자 (팀장)
							계	남	여				
					☐ 세미나실/상담실 ☐ 회의실 ☐ 공동작업공간								
					☐ 세미나실/상담실 ☐ 회의실 ☐ 공동작업공간								
					☐ 세미나실/상담실 ☐ 회의실 ☐ 공동작업공간								
					☐ 세미나실/상담실 ☐ 회의실 ☐ 공동작업공간								
					☐ 세미나실/상담실 ☐ 회의실 ☐ 공동작업공간								

「목포청년센터 누리」 사용허가 통지서

신 청 인	성 명 또는 대표자(단체명)	(☐ 남, ☐ 여)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사용기간 (준비·정리시간 포함)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시간)			사용인원 명(남 /여)
사용목적	☐ 커뮤니티 ☐ 교육 ☐ 네트워킹 ☐ 동아리 ☐ 기타()			
사용공간	☐ (3층)세미나실/상담실 ☐ (3층)회의실 ☐ (4층)공동작업공간			
	☐ 빔프로젝터 + 스크린 ☐ 음향시설(마이크)			
행 사 명				
사 용 료	일금 원(W)			
감면여부	☐ 여 ☐ 부			
감면사유				
「목포청년센터 누리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목포청년센터 누리」 사용불가 통지서

신 청 인	성 명 또는 대표자(단체명)	(☐ 남, ☐ 여)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시간)			사용인원
				명(남 /여)
사용목적	☐ 커뮤니티 ☐ 교육 ☐ 네트워킹 ☐ 동아리 ☐ 기타()			
사용공간	☐ (3층)세미나실/상담실 ☐ (3층)회의실 ☐ (4층)공동작업공간			
	☐ 빔프로젝터 + 스크린 ☐ 음향시설(마이크)			
불허가 사유				
「목포청년센터 누리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목포청년센터 누리」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또는 대표자(단체명)	(□남, □여)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시간)			사용인원 명(남 /여)
사용목적	☐ 커뮤니티 ☐ 교육 ☐ 네트워킹 ☐ 동아리 ☐ 기타()			
사용공간	☐ (3층)세미나실/상담실 ☐ (3층)회의실 ☐ (4층)공동작업공간			
	☐ 빔프로젝터 + 스크린 ☐ 음향시설(마이크)			
반환금액	일금 원(W)			
취소 및 반환신청 사유				
입금계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목포청년센터 누리」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첨 부	1. 은행통장 사본 1부. 2. 기타 반환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1부.			

시설 사용료 기준(제10조 관련)

구 분(면적)		사 용 료		비 고
		기준시간	기준금액	
3층	회 의 실 (137.7㎡)	2시간	35,000원	해당시설 당일 운영시간 중 사용 가능
	세미나실/상담실 (29.35㎡)	2시간	24,000원	
4층	공동작업공간 (99.68㎡)	2시간	30,000원	

1. 기준시간은 2시간으로, 초과시간당 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 :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100 가산

2.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 기준시간으로 봄

3. 준비 및 정리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4. 위 사용료 기준 이외의 공간은 무료 사용 가능

[별표 2]

사용료 반환 기준_(제12조 관련)

구 분	유 형	반 환 기 준
사용료	사용일 7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사용일 6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25 공제 후 나머지 반환
	사용일 1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공제 후 나머지 반환
	사용일 당일 취소 시	미반환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잔여기간 사용료 반환

목포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3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4020 호

목포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복원과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지원 등) ① 시장은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
2. 법 제17조에 따른 세계화 촉진
3. 법 제20조에 따른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4. 그 밖에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김치산업 육성과 목포김치의 명품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단체 또는 관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김치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활용 지원) 시장은 김치 제조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목포김치 명품화 사업 추진) 시장은 목포김치의 명품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목포김치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2. 목포김치 품질 표준화 관리
3. 목포김치 용기 및 포장 디자인 개발
4. 목포김치의 유통 및 홍보

제7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조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구입 촉진) ① 시장은 목포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과 목포시 출자·출연기관이 김치를 구매하는 경우 법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를 구매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② 시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에 대하여 공공기관 및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 및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김치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하기 위해 관련기관, 학교, 연구소,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긴밀히 협력한다.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3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4021 호

목포시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라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어장과 양식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리선”이란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어장 또는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말한다.

제3조(관리선의 정수)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및 어장규모별로 사용할 수 있는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관리선의 규모)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톤수의 동력어선”이란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말한다.

제5조(관리선의 정수 제한) 별표에도 불구하고 1명이 여러 종류의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최대 3척까지 관리선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구획어업 관리선은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관리선 정수 및 사용기준(제3조 관련)

어업의 종류	양식의 방법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해조류 양식	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	1. 어촌계소유 양식어장 입어 행사자는 1인 1척 다만, 100척(100줄) 미만 2척 이내, 100척(100줄) 이상 3척 이내
패류 양식	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 가두리양식	1. 어촌계소유 양식어장 1건에 1척 2. 가두리식 양식어업은 1ha(20조) 미만 1척, 1ha(20조) 이상 ~ 3ha(60조) 미만 2척 3. 바닥식 양식어업으로서 양식장형망선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업의 종류별 관리선의 정수 범위 내에서 어장구역의 수면별로 1척까지 지정. 다만, 50ha이상일 경우는 2척까지 지정 4. 바닥식 양식어업으로서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으로 관리선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어업의 종류별 관리선의 정수 범위 내 에서 어장구역의 수면별로 1척까지 지정
어류 등 양식	가두리식양식 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 축제식양식 (허가 제외)	1. 어촌계소유 양식어장 1건에 1척 2. 가두리식 양식어업은 1ha(20조) 미만 1척, 1ha(20조) 이상 ~ 3ha(60조) 미만 2척

복합 양식	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 혼합식양식 가두리양식 축제식양식	1.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 등 양식어업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따름
마을 어업		1. 어촌계 소유 어장은 마을어업 1건에 1척 2. 양식장 형망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업 면허 1건당 1척으로 함
협동 양식 어업		1.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 등 양식어업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따름
정치망 어업		1. 어촌계 소유 어장은 정치망어업 1건에 1척 2. 양식장형망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업 면허 1건당 1척으로 함
구획어업 - 건간망 - 건망 - 들망 - 선인망 - 승망류 - 안강망 - 장망류 - 지인망 - 해선망		1. 어업 허가 1건에 1척 2. 규모는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 선으로 함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3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4022 호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전고지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의 행정행위가 신청되었 을 때에는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u><신 설></u>	제3조(사전고지대상) ① ----- ----- ----- ----- -----. 1. ~ 10. (현행과 같음) <u>11.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 정하는 시설</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목포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3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4023 호

목포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택예방접종 종류) ①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은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1회
2. 인플루엔자 매년 1회
3. 백일해 1회(임신시 마다 1회)
4.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선택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접종일 기준 목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7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인플루엔자: 접종일 기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 세 미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라. 「목포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마. 시장이 인플루엔자 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백일해: 접종일 기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4.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4조(접종비용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 보건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① 선택예방접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선택예방접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방접종 실시기관에서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

한 후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예방접종 실시 후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택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목포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 「목포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 자는 이 조례 제6조에 따른 신청인으로 본다.

선택예방접종 신청서

신청인 (접종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선택예방접종 종류		☐ 인플루엔자 ☐ 대상포진 ☐ 백일해 ☐ 기타		
「목포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아래 칸에 서명 또는 날인)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이 건 업무 처리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날인) 목포시장 귀하				

목포 종합경기장 관리·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3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4024 호

목포 종합경기장 관리·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목포 종합경기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포 종합경기장"(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주 경기장, 보조경기장, 반다비체육센터를 말하며, 체육시설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또한 "부대시설"은 그에 부속된 음향, 조명, 체육기자재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은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광고·게시·공연·관람·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자"는 일정 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료"는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는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는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운영자 및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이하 "수탁자"라 한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7. "단체"는 특정 단체 또는 같은 목적으로 하루 기준 20명 이상이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사용하거나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8. "기본료"는 기본 사용료를 말한다.

9. "어린이"는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10.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11. "성인"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노인은 경로우대 대상으로 한다.

12. "군인"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13. "체육경기"는 공인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 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 외"는 본 조항 외의 경기 및 행사 등을 말한다.

14.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으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체육시설을 운영 할 때에는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성희롱·성폭력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있어 성별, 연령, 장애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성평등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각 시설별로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시설을 개방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대회 및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개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시설 종류별 사용료, 이용종류 및 이용방법

3.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현황, 관리상태 등 활용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3항과 4항에 규정된 내용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휴관일)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다만, 전용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추석날(연휴 포함)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의해 사용 3개월 전부터 7일 이내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사용전일까지 시장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신청 순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한다. 단, 동일한 우선순위의 사람이 경합할 경우 추첨 등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경조행사
2.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시의 보조·후원을 받아 주최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행사·경기(사용자가 경합할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자가 우선한다.)
5.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시 등 행사

제9조(사용자의 부대시설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료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제10조(사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영리 목적 행사 및 상행위 등)
4. 허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5조에서 규정한 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체육시설 내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제12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분	하 계 (3월 ~ 10월)	동 계 (11월 ~ 2월)	비 고
조기	06:00~08:00	06:00~09:00	일시사용 4시간 미만
주간	08:00~19:00	09:00~18:00	
야간	19:00~22:00	18:00~22:00	

② 체육시설의 여건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야간 사용시간은 조명시설이 설치된 체육시설에 한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또는 불가항력으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 "연습", "방송", "부속시설", "상행위", "중계"로 구분하여 별표 2 부터 별표 5 까지와 같다. 다만, 규정 외 위탁 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연습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각 시설별로 자동발매기 및 수동매표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는 초과시간당 전용료 기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행사) 종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 ① 전용자는 전용사용료 전액을 전용일 3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전용일 3일 미만을 남겨두고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을 연간 계속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월 사용료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습사용자는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야간 계속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보며, 체육 이외의 행사 및 연습사용하는 때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초과 시간당 :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2. 초과 게임당 :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④ 추가사용료 및 중계방송·상업(광고 등) 기타의 부속시설 사용료는 사용 후 다음날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⑤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사용료 감면)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은 별표 6과 같다.

제16조(사용료 반환)

① 시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연습사용료는 미사용의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시설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배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허가 취소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2. 사용 예정자 또는 사용·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가. 사용개시 7일 전 취소 : 사용료 전액

나. 사용개시 2~6일 전 취소 : 사용료의 100분의 90

다. 사용개시 당일 취소 : 사용료 반환 없음

3.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권리의 양도 금지 등)

① 체육시설의 이용 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장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사용자의 배상)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물 등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손해에 대하여는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관람료) ① 전용자가 관람권(초청장, 초대권 제외)을 발행하는 경우 전용사용료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체육행사, 공공행사, 문화예술행사에 있어서는 관람권 매표액에서 법률로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한다.

2. 프로경기를 포함한 일반행사에는 법률로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한다.

3. 초대권(초청장)은 전체관람권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발행한 매수는 관람권으로 한다. 다만, 시민의 문화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관람권 수입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관람권은 관람료를 명시하여야 하며 전용자 부담으로 발행한다.

④ 제1항의 전용사용료는 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하며, 관람료 징

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0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연습권은 체육시설의 각 매표소 및 자동발매기를 통하여 매표한다. 다만, 전용자가 발행한 관람권 및 입장권의 예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용자가 관람권을 매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도 사전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터넷 판매 등 검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관람 또는 입장의 제한) 시장은 관람권 또는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이미 입장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행사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체육시설을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안전요원)없이 입장하는 자
4. 전염성 질환자 및 만취된 자
5. 성희롱·성폭력, 성별혐오 표현 등 타인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
6. 그 밖에 시장이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제2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체육회 및 관련 경기단체,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수탁자선정)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위탁사유 발생시 관계 전문가 등을 포함한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3. 재정 부담능력 등

②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수탁자는 체육시설 및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비용 등을 성실히 집행하

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④ 제27조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는 공정한 집행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용실태(이용료 현황, 사용료 현황,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시설물 등의 설치)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관리와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형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비용은 수탁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실외에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하며,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 비용도 수탁자 전액 부담으로 한다.)

②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할 때에도 그 비용은 수탁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그 시설물을 시장에게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고 지도·감독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수탁·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밖에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7조(수탁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2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공유 재산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28조(위탁계약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제2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국가 또는 도·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해지된 날부터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제29조(운영요원 등)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강사, 안전요원, 자원봉사자 등의 운영요원을 위촉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운영요원에게 성인지 감수성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체육지도자가 체육시설 내에서 강습을 하는 경우 수입에 대한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회원제 운영)

①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객들에게 셔틀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31조(관계규정의 준용)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지휘·감독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목포종합경기장 주경기장	목포시 대양산단로 23(대양동)
·목포종합경기장 보조경기장	목포시 대양산단로 23(대양동)
·반다비체육센터	목포시 대양산단로 199번길 93-41(용해동)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제14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시설별		사용 시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 고
			평일	토·공 휴일	평일	토·공 휴일	
주경기장	필드	1일	250,000	375,000	500,000	750,000	
	트랙		120,000	180,000	240,000	360,000	
보조경기장	필드	1일	150,000	225,000	300,000	450,000	
	트랙		70,000	105,000	140,000	210,000	
반 다 비 체육센터		1일	90,000	135,000	180,000	270,000	

○ 사용시간은 제12조(사용시간)의 주간 사용시간을 적용한다.

○ 야간 사용은 전용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별표 3]

체육시설 중계방송료 (제1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중계방송		녹화방송		영화촬영
	TV	라디오	TV	라디오	
목포종합경기장	40,000	30,000	20,000	15,000	TV중계 방송료와동일
반다비체육센터					
○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한다. ○ 뉴스 보도용은 무료로 한다.					

[별표 4]

체육시설 부속시설 사용료 (제13조 관련)

구 분	전 광 판	라이트(조명)	음향시설
목포종합경기장	60,000원+실제사용 실제사용전기요금+(전기검침기 본료×1/30×사용일)	30,000원+실제사용 실제사용전기요금+(전기검침 기본료×1/30×사용일)	기본료(30,000) + (5,000원 × 마이크대수
반다비체육센터	없 음	실제사용전기요금+(전기검침 기본료×1/30×사용일)	5,000원 × 마이크대수
○ 전광판과 조명탑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기본료는 둘 중 1가지에만 적용한다. ○ 야간 사용은 전용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구 분	전기사용료	냉난방사용료
목포종합경기장	전기검침기본료 + 실제 전기요금	실제 전기사용료 및 유류대(도시가스 등)
반다비체육센터		

[별표 5]

체육시설 외부광고 등 (제1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애드 별론	선 전 광 고 게 시	비고
목포종합 경기장	1일 1개 5,000	소형(10m미만×1.3m) ◦ 5일이내 50,000 1일초과 5,000가산 연간 200,000	
목포반다비 체육센터	1일 추가 3,000	중형(20m미만×1.3m) ◦ 5일이내 70,000 1일초과 7,000가산 연간 350,000 대형(30m미만×1.3m) ◦ 5일이내 100,000 1일초과 10,000가산 연간 1,000,000	

[별표 6]

사용료 감면 (제15조 관련)

구 분		감면률	비 고
전 용 사 용 료	1. 국가나 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훈련	80%	
	3.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어린이, 군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80%	
	4.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체육행사	80%	
	5. 시의 보조, 후원, 지원을 받아 개최되는 비영리 행사	80%	
	6.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	80%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80%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80%	
	9.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 명문가 예우 대상자	80%	
	10.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80%	
○ 중복 해당될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만 적용한다. ○ 사용료 감면은 신청일 기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단 체 명				생년월일(성별)			
	신 청 자 (대 표 자)				경기(행사)명			
사 용 시 설 명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일간)						
참 여 예 정 인 원		총 인 원	명	임원(선수)	명	입 장 자	명	
부 속 시 설		라이트	음향(마이크)	전 기	전광판	중계방송	냉난방	
		상행위						
관 램 권	종 류	개 인			단 체			합 계
		일반	학생군인	어린이·경로	일 반	학생군인	어린이·경로	
	발행매수	매	매	매	매	매	매	매
	금 액	원	원	원	원	원	원	원
「목포 종합경기장 관리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 제2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 대장

[illegible]

체육시설 사용 허가서

신 청 인	주 소				전 화 번 호			
	단 체 명				생년월일(성별)			
	신 청 자 (대 표 자)				경기(행사)명			
사 용 시 설 명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일간)						
참여 예정인원		총 인 원	명	임원(선수)	명	입 장 자	명	
부 속 시 설		라이트	음향(마이크)	전 기	전광판	중계방송	냉난방	
		상행위						
관 램 권	종 류	개 인			단 체			합 계
		일반	학생·군인	어린이·경로	일 반	학생·군인	어린이·경로	
	발행매수	매	매	매	매	매	매	매
	금 액	원	원	원	원	원	원	원

「목포 종합경기장 관리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사용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목 포 시 장

관 랑 권 검 인 신 청 서

행사 또는 경기명			
		개 최 일 시	
일 반 권	종 별	액 면 가	매 수
		원권	매
		"	"
		"	"
		"	"
	계	"	"
할 인 권		"	"
		"	"
		"	"
		"	"
		"	"
	계	"	"
합 계		"	"
위와 같이 검인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목포시장 귀하			

관 랑 권 잔 표 확 인 서

행 사 또 는 경 기 명					
전 용 자					
관 랑 권 종 별		액 면 가	발행매수	매 표 수	잔 표 수
일 반 권					
	계				
할 인 권					
	계				
위와같이 확인함.					
20 년 월 일					
전 용 자 (인)					
관계공무원 (인)					
목포시장 귀하					

관 랑 료 정 산 서

행사 또는 경 기 명						
전 용 자			개 최 일 시			
관람권종류	일 반 권		할 인 권		계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계						
총 매 표 액	사 용 료 공 제 액		전 용 자 인 도 액		사용료공제내용	
원	원		원			

위와 같이 관람수입을 정산합니다.

20 년 월 일

정 산 자 (인)

입회공무원 (인)

목포시장 귀하

목포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3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4025 호

목포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목포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목포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목포시 연산동 1300번지에 있는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2. “복합문화센터”란 문화, 편의, 체육 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단일 또는 복합건물에 집적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12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는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과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여가활동, 교육 및 회의 등을 위한 시설 제공
3. 근로자의 성별·연령에 따른 복지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및 시설 제공
4.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및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용자 범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단체
2.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근로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3. 시민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시설) ①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의시설 : 식당, 작업복세탁소 등
2. 체육시설 : 피트니스실 등
3. 문화시설 : 다목적강의실, 회의실 등
4. 관리사무실 및 기타 부속시설

② 센터의 시설은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이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휴관일)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시장이 센터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할 경우에는 5일 전까지 그 내용을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운영지원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

게 위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결과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4조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를 센터의 관리·운영 및 근로자 복지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용도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8조에 따른 수탁자는 위·수탁 조건에 따라 센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센터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및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검사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 등) ① 센터의 시설 중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 시에 시설보호 및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사용자가 센터의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⑤ 시장과 수탁자는 시설 사용허가 및 이용 승인 과정에서 성별·연령 등의 이용 현황을 수집하여 운영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이용 신청 및 승인 등) ① 센터의 시설 중 별표 1로 정하는 이용신청 시설 및 강좌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승인 신청서를, 이용 승인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 승인 변경신청서를 작성

하여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타인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해야 하며, 이용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 승인서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 승인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필요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용 승인 절차는 이용료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이용료 등) ① 센터의 이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 승인을 취소한다.

③ 시장과 수탁자는 이용료 납부 및 감면 현황을 성별로 분리하여 통계화하고, 이 자료는 프로그램 운영 개선에 활용될 수 있다.

제15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이용을 신청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이용료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나. 관내 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기업 및 근로자 관련 행사

다. 시범운영기간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이용료 100분의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거주자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 신청 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승인 신청서에 감면사유를 기재 후 제출하여 감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이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센터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자가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 승인 취소신청 및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이용의 제한 및 이용 승인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8조(강사 운용)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할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대장 비치)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이용 승인 신청서 접수대장
2. 이용 승인 대장
3. 성별·연령 등 이용자 현황을 기록·관리할 수 있는 대장
4.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장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용허가 및 이용신청 시설

구분	시 설 명	비 고
사용허가	식당	
이용신청	다목적강의실	
	회의실	
	체육시설	

[별표 2]

목포시 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이용료

1. 시설이용료

(단위: 원)

시 설 명	기 준	이용료	비 고
다목적강의실	2시간	20,000	■ 1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 100분의 50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회의실	2시간	10,000	
체육시설	1개월	20,000	

2. 교육 수강료

(단위: 원)

구 분	기 준 (1주 수강시간)	수강료(월)	비 고
체육·문화·취미· 교양강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시간 이하	25,000	■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5시간 초과	30,000	

※ 수강료는 상기 금액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3. 작업복세탁소 요금표

(단위: 원)

구 분	가 격	비 고
하복, 춘추복	1,000원(1벌당)	상·하의 각각 500원
동복, 특수복	2,000원(1벌당)	상·하의 각각 1,000원

[별지 제1호서식]

이용 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명 (단체명)		전화번호
	성별	남 / 여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이용시설 (프로그램)		
이용일시 (기간)	[시작] 년 월 일 (요일) :	부터	
	[종료] 년 월 일 (요일) :	까지(회)	
이용목적			
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사항			
감면사유 (해당시)			
비고			
「목포시 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복합문화센터의 시설(프로그램) 이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목포시장 귀하			
첨부 (필요시)	1. 행사(공연)계획서 1부. 2.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서류 1부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별지 제2호서식]

이용 승인 변경 신청서

변 경 사 유			
변 경 사 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이용기간		
	이용시설		
	부속설비		
	기 타		

년 월 일 목포시 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이용 승인을 받았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목포시 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 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성 별 : 남 / 여

목포시장 귀하

이용 승인서

신청인	성 명 (단체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주 소			
이용시설 (프로그램)				
이용목적				
이용 승인기간		[시작] 년 월 일 (요일) : 부터 [종료] 년 월 일 (요일) : 까지(회)		
이용료		금 원		
감면여부		여 ☐ 부 ☐		
감면사유				

이 용 시 설 (프로그램)	이 용 료	이용료 부과내역	비 고 (단위: 원)

「목포시 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합문화센터 시설(프로그램)의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인)

이용 승인 불허가 통지서

신청인	성 명 (단체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주 소			
신청 내용	이 용 시 설 (프로그램)			
	이용 신청기간	년 월 일 (요일), 년 월 일 (요일),	: 부터 : 까지	
불허가 사유				

「목포시 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복합문화센터 이용 승인 신청을 위와 같은 사유로 불허가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인)

[별지 제5호서식]

이용 승인 취소신청 및 이용료 반환신청서

신 청 인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성별	남 / 여	전화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이용 승인 시설 (프로그램)				
이용 승인 기간				
납부한 이용료				
입금계좌		- 은행명 : - 계좌번호 :	예금주명	
취소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목포시 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합문화센터 시설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목포시장 귀하				
첨 부	1. 은행통장 사본 1부 2. 기타 반환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1부			

목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3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규칙 제 1902 호

목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용차량”이란(이하“차량”이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목포시(이하“시”라 한다)본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의회사무국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20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1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목포시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목적상 공무용 차량임을 표기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차량 운영 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차량의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을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총괄부서는 매년 1월31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1. <신 설>	1. “공용차량”이란(이하 “차량”이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동, 의회사무국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신 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1. ~ 11. (생략)	3. ~ 13. (현행과 같음)
제20조(차량 관리부서 지정)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목포시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21조(차량 관리방법)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신 설>	④ 목포시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제28조(지도·점검 등)

①·② (생략)

③ <신 설>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
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용 차량임
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목적상 공무용 차량임을 표기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차량 운영 부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차량의 보유 및 운영
관리 현황을 차량총괄부서에 제출
하여야 하며, 차량총괄부서는 매
년 1월 31일까지 시홈페이지에 공
개하여야 한다.

20 년도 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

1. 차량 정수 및 보유 현황

승용(업무용)						승합용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다목적형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화물용					특수용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 증·감 사유 :

2. 차량 운영관리 현황

총 보유수	합계(원)	총 유류비(원)	총 보험료(원)	총 수리비(원)	세금 및 부담금(원)
대					

3. 전용차량 운영관리 현황

사용자	차 이름	배기량(cc)	구입비(천원)	차량등록일	운행일수(일)

주행거리(km)	유류비(원)	수리비(원)	보험료(원)	자동차세(원)

4. 차량 교체(구입 및 매각) 현황

교체(매각)차량					
차 이름	배기량(cc)	차량등록일	총 주행거리	총 운행기간	매각사유

교체(구입)차량						
차량등록번호	용도	차 이름	배기량(cc)	차량등록일	구입가격(천원)	구매사유

목포시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3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규칙 제 1903 호

목포시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이로동·부흥동의 관할구역 현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개정규칙안

□ 이로동

동 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이로동	4	1	삼학로 347, 346, 346-1 삼학로 343번길 5, 6, 7, 15, 19, 5-1, 13, 13-1, 15-1, 14-1, 13-2, 11, 17, 17-1, 11-1, 7-2, 7-1, 21, 21-1 삼학로 341번길 4, 20, 14, 12, 12-1, 18-2, 16-1, 16, 18, 18-3 이로로 9번길 37
		2	이로로9번길 40, 42, 46 안장산로 51-2, 57, 51-1, 51, 49, 47, 45, 37, 43, 41, 39 안장산로21번길 26
		3	안장산로 35, 35-1, 29 안장산로21번길 7-1, 7-2, 9-1, 11, 11-1, 11-2, 11-3, 14, 13-1, 13-2, 13-3, 13-4, 17, 19, 19-1, 21, 25, 31
		4	안장산로 32-1, 38 안장산로40번길 4-7, 4-6, 4-5, 4-4, 4-3, 4-2, 4-1, 2, 3, 40, 44, 44-1, 5, 5-1, 5-2, 5-3, 9-1, 9
	5	1	이로로9번길 6, 8, 14, 18, 18-1, 18-2, 18-3, 18-4, 22, 20-2, 20, 20-1, 21, 25, 22-2, 22-3, 22-1 이로로 21, 25 삼학로373번길 23, 25, 27, 12, 12-1
		3	이로로 28, 28-2, 28-1, 28-3, 28-4, 28-5, 28-6, 28-7, 28-8, 28-9, 32-1, 32-2, 32, 34, 35 이로로34번길 2, 8-3, 8-2, 8-1, 8, 6-1, 6, 4, 4-1, 2-1, 1, 1-1, 3, 3-1, 3-2, 3-3, 5, 5-1, 7, 14, 16, 16-1
		4	이로로9번길 28-3, 28-1, 28-2, 28, 28-4 안장산로21번길 33(유창파크아파트)
	6	1	이로로4번길 10-1(영신빌리지) 이로로4번길 10(구. 용해아파트)
		2	이로로4번길 5, 3-2, 3-1, 3, 7 이로로 18, 18-1, 18-2, 14, 12, 10-3, 10-2, 10, 8, 6-1, 6, 5
		3	송림로 64, 66-1, 66, 66-2, 66-3, 68, 68-1, 70, 72, 74, 74-1, 74-2, 76, 65, 67, 67-1, 69, 73 영산로 360, 360-1, 362 이로로 2, 2-4, 2-6, 2-14, 2-13, 이로로4번길 2, 4, 4-1, 6
		4	이로로 3, 7 이로로9번길 3(이로초등학교) 송림로 82(팰리스빌)

동 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이로동	7	1	송림로 77-2, 77-3, 79, 81 영산로 370-1, 372 송림로 85 (센트럴펠리체아파트 101동 1, 2라인)
		2	송림로 85 (센트럴펠리체아파트 101동 3, 4라인)
		3	송림로 91, 91-1, 89, 91-2, 91-3, 91-4, 91-5, 91-6, 91-8, 91-7, 91-9, 91-10, 91-11, 91-12, 91-13, 91-14, 91-15, 93, 93-2, 95-1, 95-2
		4	송림로 97(목포과학대학교 생활관) 송림로 101-3, 101-4, 101-5, 103-1, 105
	8	1	송림로 96, 98, 98-1, 98-2, 98-3, 98-4, 100, 100-1, 100-2, 100-3, 100-4, 100-5 삼학로373번길 16, 14, 12, 14-1, 6-3, 6-4 송림로104번길 12-1, 12, 10-3, 10-2, 10-1, 10, 8, 6, 4, 2, 3-3
		2	송림로 104, 104-1, 106, 108, 110, 112, 112-1, 114, 114-1, 114-2 송림로104번길 1, 3, 3-1, 3-2, 3-3, 6, 9, 11 삼학로373번길 6-1, 6-2, 6-3, 6-4, 10
		3	송림로 101-3, 101-4, 101-5, 103-1, 105, 103, 104
		4	삼학로 388, 390, 386 쇤나루길 1, 4, 5, 5-1, 5-2, 7, 8, 8-1, 9, 11

□ 부흥동

동 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부흥동	17	6	하당남부로 107 (옥암동, 하당원캐슬오션파크)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이로동

동 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이로동	4	1	삼학로 347, 346 삼학로 343번길 6, 21, 5, 7, 15, 19, 5-1, 13, 13-1, 15-1, 14-1, 13-2, 11, 17, 17-1, 11-1, 7-2, 7-1 삼학로 341번길 4, 20, 14, 12, 12-1, 18-2, 16-1, 16, 18, 18-3 이로로 9번길 37	4	1	삼학로 347, 346, 346-1 삼학로 343번길 5, 6, 7, 15, 19, 5-1, 13, 13-1, 15-1, 14-1, 13-2, 11, 17, 17-1, 11-1, 7-2, 7-1, 21, 21-1 삼학로 341번길 4, 20, 14, 12, 12-1, 18-2, 16-1, 16, 18, 18-3 이로로 9번길 37
		2	삼학로 267번길 18-3 삼학로 275번길 16 용당로 100		2	이로로9번길 40, 42, 46 안장산로 51-2, 57, 51-1, 51, 49, 47, 45, 37, 43, 41, 39, 안장산로21번길 26
		3	이로로 9번길 40, 42 안장산로 21번길 26, 14, 31, 23, 13-3 안장산로 37, 39, 45, 57, 47, 43, 41, 44, 51-2, 51-1, 51, 44-2, 32, 32-1, 35, 35-1, 44-1 삼학로 343번길 21-1 안장산로 40번길 5-3, 22, 7, 9-1, 5-2, 5, 5-1, 3, 7, 2, 4, 32, 4-1, 4-2, 4-4, 4-3, 4-5, 4-6 용당로 138		3	안장산로 35, 35-1, 29 안장산로21번길 7-1, 7-2, 9-1, 11, 11-1, 11-2, 11-3, 14, 13-1, 13-2, 13-3, 13-4, 17, 19, 19-1, 21, 25, 31
		4	이로로 9번길 36(유창파크)		4	안장산로 32-1, 38 안장산로40번길 4-7, 4-6, 4-5, 4-4, 4-3, 4-2, 4-1, 2, 3, 40, 44, 44-1, 5, 5-1, 5-2, 5-3, 9-1, 9
	5	1	이로로 28-9, 28-7, 28-8, 28-6, 28-5, 28-3, 28-4, 28-2, 28-1, 28, 32, 32-2, 32-1 이로로 34번길 2, 2-1, 4, 4-1, 6-1, 6, 8-2, 8-1, 7, 5, 5-1, 3-3, 3-2, 3, 3-1, 1-1, 1, 14, 16, 34, 36, 8-3, 8	5	1	이로로9번길 6, 8, 14, 18, 18-1, 18-2, 18-3, 18-4, 22, 20-2, 20, 20-1, 21, 25, 22-2, 22-3, 22-1 이로로 21, 25 삼학로373번길 23, 25, 27, 12, 12-1
		3	이로로 9번길 14, 12, 18-4, 14-1, 16-1, 16, 18-2, 18, 18-3, 12-1, 12-1, 18-1, 20, 20-2, 28-9, 22-2, 22-3, 20-1 삼학로 373번길 27, 25 이로로 25		3	이로로 28, 28-2, 28-1, 28-3, 28-4, 28-5, 28-6, 28-7, 28-8, 28-9, 32-1, 32-2, 32, 34, 35 이로로34번길 2, 8-3, 8-2, 8-1, 8, 6-1, 6, 4, 4-1, 2-1, 1, 1-1, 3, 3-1, 3-2, 3-3, 5, 5-1, 7, 14, 16, 16-1
		4	이로로 18, 18-3, 18-4, 18-6, 28-1, 18-5, 18-6, 18-1, 18-2 이로로 34번길 8-3		4	이로로9번길 28-3, 28-1, 28-2, 28, 28-4 안장산로21번길 33 (유창파크아파트)

동 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이로동	6	1	이로로 4번길 10 (구용해아파트 1동 101~510호)	6	1	이로로4번길 10-1(영신빌리지) 이로로4번길 10(구. 용해아파트)
		2	이로로 4번길 10 (구용해아파트 2동 101~510호)		2	이로로4번길 5, 3-2, 3-1, 3, 7 이로로 18, 18-1, 18-2, 14, 12, 10-3, 10-2, 10, 8, 6-1, 6, 5
		3	이로로 4번길 10 (구용해아파트 3동 101~510호)		3	송림로 64, 66-1, 66, 66-2, 66-3, 68, 68-1, 70, 72, 74, 74-1, 74-2, 76, 65, 67, 67-1, 69, 73 영산로 360, 360-1, 362 이로로 2, 2-4, 2-6, 2-14, 2-13 이로로4번길 2, 4, 4-1, 6
		4	이로로 4번길 10-1(영신빌리지 101~1008호, 상가), 10 영산로 346번길 11-2		4	이로로 3, 7 이로로9번길 3(이로초등학교) 송림로 82(펠리스빌)
	7	1	송림로 66-3, 64, 62, 68, 68-1, 70, 66-2, 66, 72, 74-2 이로로 2-14, 2-2	7	1	송림로 77-2, 77-3, 79, 81 영산로 370-1, 372 송림로 85 (센트럴펠리체아파트 101동 1, 2라인)
		2	이로로 2-6, 2-4, 2, 6-1, 10, 10-2, 10-3, 12, 14 송림로 74-1 이로로 4번길 22, 20, 19, 21, 21-1, 17		2	송림로 85 (센트럴펠리체아파트 101동 3, 4라인)
		3	송림로 67, 73, 67-1, 69, 65, 73, 75, 77 영산로 360, 362, 360-1, 370		3	송림로 91, 91-1, 89, 91-2, 91-3, 91-4, 91-5, 91-6, 91-8, 91-7, 91-9, 91-10, 91-11, 91-12, 91-13, 91-14, 91-15, 93, 93-2, 95-1, 95-2
		4	이로로 2-2, 2-13, 8 이로로 4번길 2, 3, 3-1, 3-2, 4-1, 6		4	송림로 97(목포과학대학교 생활관) 송림로 101-3, 101-4, 101-5, 103-1, 105

동 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이로동	8	1	이로로 9번길 3 이로로 7, 5, 3 송림로 104번길 10-1, 2, 4, 98-4, 6, 98-1 송림로 98, 98-3, 98-2, 100-1, 100, 100-5, 104-4, 100-3 삼학로 373번길 14-1	8	1	송림로 96, 98, 98-1, 98-2, 98-3, 98-4, 100, 100-1, 100-2, 100-3, 100-4, 100-5 삼학로373번길 16, 14, 12, 14-1, 6-3, 6-4 송림로104번길 12-1, 12, 10-3, 10-2, 10-1, 10, 8, 6, 4, 2, 3-3
		2	송림로 100-2 송림로 100번길 3-3 삼학로 373번길 6-3, 6-4, 10, 14, 12 송림로 104번길 10-2, 12-1, 10-3, 12, 8, 9, 11, 10, 6		2	송림로 104, 104-1, 106, 108, 110, 112, 112-1, 114, 114-1, 114-2 송림로104번길 1, 3, 3-1, 3-2, 3-3, 6, 9, 11 삼학로373번길 6-1, 6-2, 6-3, 6-4, 10
		3	송림로 104번길 3-1, 1, 3, 3-2 송림로 104-1, 108, 104-1, 106, 110, 110-1, 112, 112-1, 114-1, 114, 114-2 삼학로 373번길 6-2, 6-1, 6		3	송림로 101-3, 101-4, 101-5, 103-1, 105, 103, 104
		4	송림로 97, 101-3, 95-2, 91-2, 101-5, 91-8, 103-1, 105, 103, 101-4, 95, 95-1, 93-2, 95-1 쇳나루로 4, 8, 8-1, 9, 7, 5-1, 5-2, 5, 1 삼학로 388, 390 이로로 8		4	삼학로 388, 390, 386 쇳나루길 1, 4, 5, 5-1, 5-2, 7, 8, 8-1, 9, 11
		5	송림로 95-2, 91-2, 8, 7, 10, 89, 91-1, 91, 91-12, 13, 14, 11, 9, 93-2, 91-15, 93, 93-1, 91-5, 6, 4, 91-3, 85, 81, 79, 81-1, 77-2, 83 영산로 370-1			폐지

□ 부흥동

동 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부흥동	17	6	신설	17	6	하당남부로 107 (옥암동, 하당원캐슬오션파크)

2026년 목포시 지적재조사사업 위·수탁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목포시 관해마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일필지 측량·조사 등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30일

목 포 시 장

1. 책임수행기관의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2. 지적재조사지구 명칭 : 관해마을지구
3. 지적재조사지구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용해동 490번지 일원(전남서부보훈지청 일원)
 - 나. 사 업 량 : 129필지, 44,285㎡
4.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할 측량·조사에 관한 사항
 - 가. 토지현황조사 및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 나. 지적재조사측량 중 경계점 측량 및 필지별 면적산정
 - 다. 경계설정 및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 라. 경계재설정 및 임시경계점표지 재설치
 - 마. 경계점표지 설치, 경계확정측량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 바. 지적재조사지구의 내·외 경계 확정, 측량성과물 작성
 - 사. 기타 이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팀(☎ 061-270-3669)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